

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 안내

5월 19일부터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 교육을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,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.

-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함양하고 법 준수 풍토를 높이기 위하여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시정기회를 1회 부여하고 불이행할 경우,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5월 19일부터는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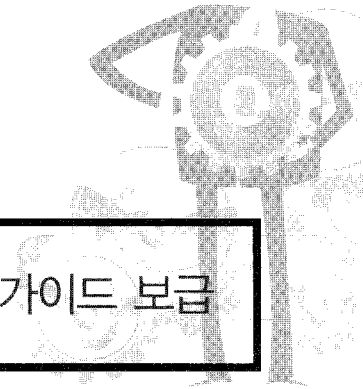
이는 법 위반에 따른 시정기회 1회 부과를 사업주가 악용하여 사전에 법을 지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“고용노동부에 적발되면 그때 시정하면 된다”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이다.

- 또한,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안전모·안전화·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경고 없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식과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.
- 사업주나 근로자의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안전수칙 준수의 생활화를 도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및 사업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약 1개월간의 홍보·계도기간을 거쳐 5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.

가톨릭의대 산업의학센터/산업의학과 이전 안내

2011. 05. 01.부터 가톨릭의대 산업의학센터/산업의학과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전한 것을 알려드립니다.

- 이전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번지 서울성모병원 별관(지하 1층)
- 대표전화 : 2258-6690 / 팩스 : 2258-6691



고용노동부, 도·소매업의 산업재해 예방 가이드 보급

4월 26일(화), 고용노동부는 슈퍼마켓·마트 등 유통업체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「도·소매업의 산업재해 예방 가이드」를 제작·보급하였다.

주요 내용은 산재발생 유형과 위험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안전보건 텐-텐(Safety & Health 10-10) 수칙과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작업자를 위한 건강관리 요령 등이다.

〈안전보건 텐-텐 수칙〉

- ① 보행 전 장애물 확인 및 정리 정돈
- ② 미끄럼 방지용 장화 또는 안전화 착용
- ③ 사다리 사용 작업 시 2인 1조 작업
- ④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모·안전벨트 착용
- ⑤ 대형화물 운반 시 작업반경내 작업자와의 출입 금지
- ⑥ 칼 등 날카로운 조리기구 사용 시 안전장갑 착용
- ⑦ 육절기 등 조리기구 청소 시 기계 정지
- ⑧ 중량물 운반시 보조기구 사용
- ⑨ 작업 전·후 스트레칭
- ⑩ 지속적인 입식작업 시 의자 비치

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부터 기업형슈퍼마켓(SSM) 등 대상 사업장에 대해 각종 점검·감독을 실시해, 관련 법령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은 행정·사법 처리할 예정이다. 🍷